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원지
전화 042-470-4040 / 팩스 042-470-4240

보도자료

2024. 5. 28.(화)

제목

JMS 교주 정명석과 주치의 등 공범 4명, 성폭력 등 추가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금일(5. 28.)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추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 ▲ 정명석이 기독교복음선교회 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D○○ 및 E○○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여 준강간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 ▲ 정명석 주치의인 A○○와 JMS VIP 관리자 C○○이 피해자 D○○를 관리하면서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사실을 규명하여 준유사강간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 ▲ 정명석, A○○ 및 JMS 인사담당자 B○○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확인하여 정명석, A○○ 및 B○○ 등 3명을 폭처법위반(공동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함
- 검찰은 ① 현재 재판 중인 관련 사건과 송치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② 추가 피해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여 교주 정명석이 종교적 세뇌교육을 통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조직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하여 정명석 및 JMS 내부 조력자들을 엄단함

□ JMS 교주 정명석은 지난 '22. 10. 28.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데 이어 '23. 4. 14. 위 여신도 등에 대한 무고 및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되어 '23.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3년 등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

※ '23. 5. 3.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JMS 2인자 정조은(예명)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는 등 교주 정명석의 공범 사건도 재판 계속 중임

□ 대전지검은 정명석과 공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정명석의 추가 성폭력 사건도 경찰과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등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성범죄를 끝까지 파헤쳐 암장되는 범죄가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음

1 피고인 및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순번	성명	예명*	직책
1	정명석(남, 79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2	A○○ (여, 48세)	없음	정명석 주치의, JMS 목사
3	B○○ (여, 53세)	황○실	JMS 인사담당자
4	C○○ (여, 58세)	주○빛	JMS VIP 관리자

* JMS에서 사용하는 정명석이 지어준 이름

2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정명석

- '18. 8. ~ '22. 1.경 1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하고 '18. 4. ~ '19. 1.경 7회에 걸쳐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하여 [준강간 등]

- A○○, B○○과 공모하여 '22. 6. 29.경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피고인 A○○

- '18. 8. ~ '22. 1.경 피해자D○○를 정명석에게 데려다 주고 단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명석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회에 걸쳐 정명석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준유사강간방조 등]
- 정명석, B○○과 공모하여 '22. 6. 29.경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피고인 B○○

- 정명석, A○○과 공모하여 '22. 6. 29.경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피고인 C○○

- '18. 10. 8.경 정명석과 피해자 D○○가 단둘이 화장실로 가도록 유도하는 등 정명석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준유사강간방조]

2

수사 경과

- '22. 12. ~ '23. 1. 피해자 D○○·E○○,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 및 수사진행
- '23. 8. 18. ~ 22. 경찰, A○○, B○○, C○○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및 검찰 청구
- '23. 8. 29. 대전지법, 공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 방조의 고의 등에 다툼이 있고,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 '23. 10. 31. ~ 11. 1. 경찰, A○○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및 검찰 재청구
- '23. 11. 6. 대전지법, 구속영장 기각
 - ※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
- '23. 11. 15. 경찰, 불구속 송치
- '24. 1. ~ 5. 검찰, 피의자들과 피해자 조사 진행,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 ※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교육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확인하여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기소
- '24. 5. 28. 검찰, 정명석, A○○, B○○, C○○ 불구속 기소

3

수사결과 및 의의

- 검찰은 ▲ 정명석의 피해자 2명에 대한 추가 범행을 규명하여 기소하고, ▲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교육으로 인해 정명석을 ‘메시아’로 인식하여 정명석에게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명확히 하고, ▲ 주치의, JMS 인사담당자, JMS VIP 관리자 등 JMS 간부들이 ‘신앙스타’를 관리하며 정명석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함

※ ‘신앙스타’는 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나, 실제로는 미모의 여신도를 선별하여 정명석에게 선택받은 존재로 세뇌시켜 성폭력 범행 대상이 됨

- ‘23. 5. 3. 공범으로 기소된 JMS 간부들 외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조력한 JMS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하여, JMS 내 조직적인 성폭력 범죄의 구조를 재차 확인하고 이를 엄단함

4

향후 계획

- 대전지검은 조직적인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정명석 및 공범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황을 고려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치료 지원하고,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도 정명석과 그에 가담한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암장되지 않도록 끝까지 파헤쳐 정명석과 공범들이 구축한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